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COP27 결과 공유와 대응전략 세미나

파리협정 6조 협상결과 및 대응전략

COP27/CMA4 Article 6 Negotiation Results and Corporate Response Strategies

한국기후변화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이충국 탄소배출권센터장
cklee@kric.re.kr

CHAPTER 1

파리협정 6조와 우리나라 국제감축사업

1. 파리협정
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감축목표
3. 우리나라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4. 파리협정 6.2조
5. 파리협정 6.4조

01 국제 기후변화 대응 경과

- '92.5 기후변화 협약채택
- '94.3 기후변화 협약발효
- '01.12 마라케쉬합의문 채택 (흡수원 등)
- '94.3 교토의정서 채택
- '05 EU-ETS 시행
- '05.2.16 교토의정서 발효
- '11.12 더반플랫폼 채택 (Post 2020)
- '10.12 칸쿤합의문 (GCF설립합의)
- 교토의정서 연장 ('12~'20)
- '12.12 도하결정문 (신기후체제 논의)
- '15.12 파리 협약 체결 (신기후체제)
- '22.11 손실 피해 복구 기금 신설 합의

선진국 개도국 구분없는 전세계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 노력

1994	2001	2005	2010	2011	2012	2015	2021
-	COP6	COP11	COP16	COP17	COP18	COP21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기후변화 대응 모범국가 및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 수행 노력

- '93.12 기후변화협약 가입
- '98.9 교토의정서 비준
- '99 1차종합 대책수립
- '02 2차종합 대책수립
- '05 3차종합 대책수립
- '05.1 KVER제도(산업부)
- '08.09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 '10.4 녹색성장 기본법
- '11 목표관리 제도시행
- '12.12 GCF유치 확정
- '16.11 파리협정비준
- '15.1 배출권 거래제
- '21.12 NDC 제출(re)
- '21.9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2 파리협정의 개요

2015 Paris Agreement / 194 Parties / NDC 151 Parties - 40GtCO2eq (2010대비 +5.9%)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없이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자발적)

글로벌 감축목표	감축 목표	글로벌 이행점검	IMM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기후변화 적응	재원조성 기술이전	REDD+
2.0℃	5년단위제출	5년단위		대책수립	천억불/년	흡수원

1 지속가능발전 메카니즘

Sustainable Development

> 국제기구의 관리감독

> 지속가능발전, 환경건전성

2 협력적 접근법

Cooperative Approaches

> ITMO 사용 허용

> CMA에서 정한 기준 적용

3 비시장접근법

non-Market Approaches

> 감축과 적응을 포괄

> 기술이전, 능력배양 등 고려

NDC & LEDS	환경건전성/이중계산방지	지속가능성(SDG)	진전원칙
지속가능한 GHG 감축	전지구 온실가스 순감축	개도국 지속가능개발	이행점검/후퇴금지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3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3차에 걸쳐 NDC 제출 –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4.367억톤) ➡ 2.91억톤 감축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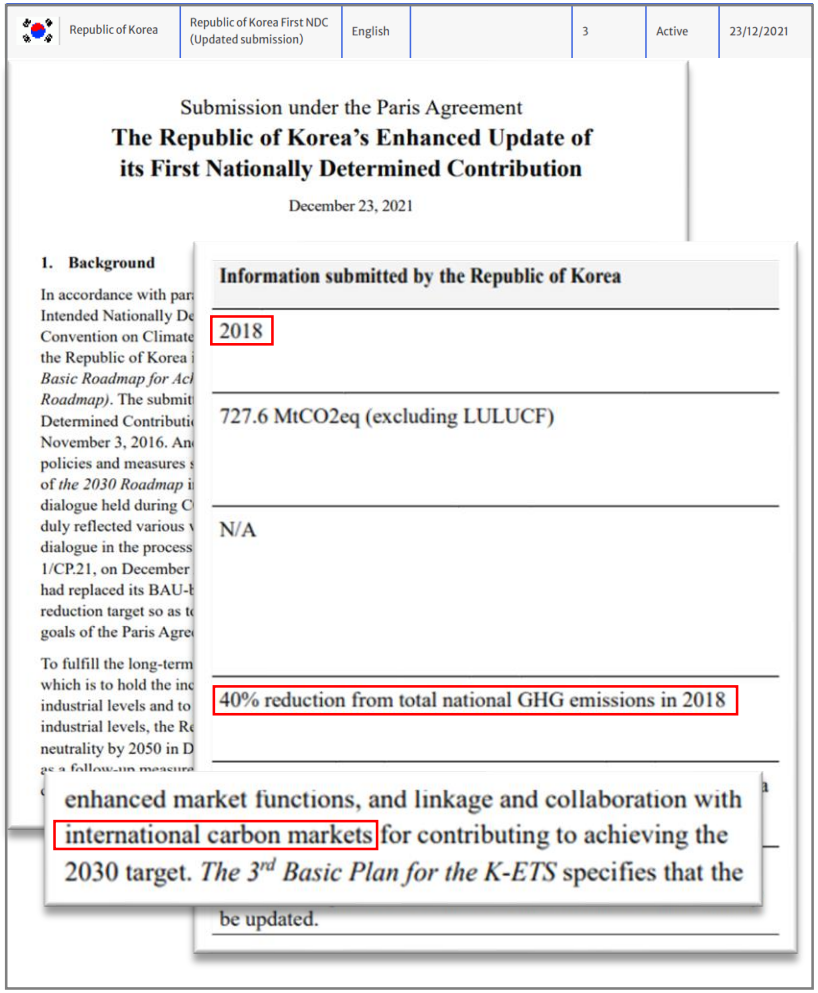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First NDC (Updated submission)	English		3	Active	23/12/2021

Submission under the Paris Agreement

The Republic of Korea's Enhanced Update of its Firs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December 23, 2021

1. Background

In accordance with par
Intended Nationally De
Convention on Climate
the Republic of Korea
Basic Roadmap for Ac
Roadmap). The submit
Determined Contributi
November 3, 2016. An
policies and measures
of *the 2030 Roadmap* i
dialogue held during C
duly reflected various
dialogue in the process
1/CP.21, on December
had replaced its BAU-
reduction target so as t
goals of the Paris Agre

To fulfill the long-term
which is to hold the inc
industrial levels and to
industrial levels, the Re
neutrality by 2050 in D

Information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2018
727.6 MtCO2eq (excluding LULUCF)
N/A
40% reduction from total national GHG emissions in 2018

enhanced market functions, and linkage and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for contributing to achieving the 2030 target. *The 3rd Basic Plan for the K-ETS* specifies that the

be updated.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총 감축 목표량 (291백만톤)

국내(507백만톤 배출목표)	
전환	119.7백만톤
산업	37.9백만톤
건물	17.7 백만톤
수송	37.1백만톤
농축산	6.7백만톤
폐기물	8백만톤
수소	7.6백만톤
기타(탈루 등)	1.7백만톤

국외 등(70.5백만톤감축목표)	
흡수원	26.7백만톤
해외감축	33.5백만톤
CCUS	10.3백만톤

정부의 국제감축실적 확보 필요량

ETS를 통한 민간의 확보량은 국가 배출량 증가 상쇄분으로 활용

2030 감축경로 설정에 따라 해외감축 1억톤 이상 필요전망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4 우리나라의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2022.8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의결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전략

국제감축사업 :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후 감축실적을 이전받는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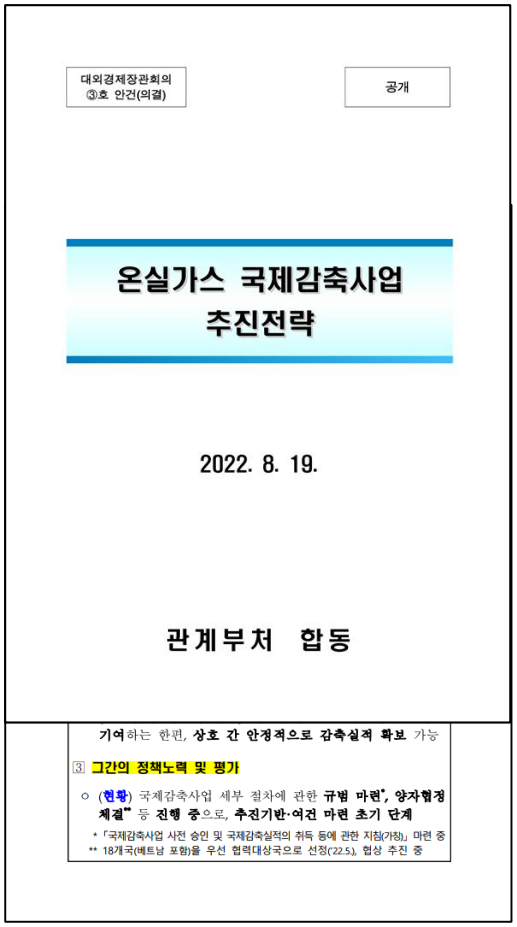

대외경제장관회의 ③호 안건(의결)

공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2022. 8. 19.

관계부처 합동

기여하는 한편, **상호 간 안정적으로 감축실적 확보** 가능

③ **그간의 정책노력 및 평가**

○ (**현황**) 국제감축사업 세부 절차에 관한 **규범 마련***, **양자협정 체결**** 등 **진행 중**으로, **추진기반·여건 마련 초기 단계**

*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가칭)」 마련 중

** 18개국(베트남 포함)을 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선정('22.5.), 협상 추진 중

① 감축목표 뒷받침 — 비용효과적 2030 목표달성 기여

② 신산업 동력 — 감축기술보유기업 신시장 참여기회

③ 양자협력 내실화 — 개도국 탄소중립역량 강화 및 상호간 감축실적 확보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 신설

국내 추진기반 구축	G2G 추진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 감축경로 도출	> 양자협정 체결확대	> 사업발굴 노력전개
> 규범/체계 정비	> 양자 ODA연계	> 자금조달 등 지원
> 지원모델 설계	> 국제기구(기금) 참여	> 공공기관 참여유도
• 국제감축등록부	• 18개국대상 협정준비	• 신규방법론개발(CCS등)
• 경로설정(23년상반기)	• ODA사업과의 연계	• 전과정 컨설팅지원
• 투자지원/구매지원	• MDB/WB등 협력	• 민관합동사업 추진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5 파리협정 6.2조

다양한 협력방식을 통해 당사국 간 ITMO의 이전 및 NDC 반영
거래제 연계, 공동의상쇄제도 이행 등을 통해 감축실적의 국가간 이전방식

6.2 조 협력적 접근법 (cooperative approach)

양자/다자의 형태로 당사국들 간의 자발적 협력을 통하여 발행된 감축실적을 NDC 이행에 활용하는 접근법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물 (ITMO)의 논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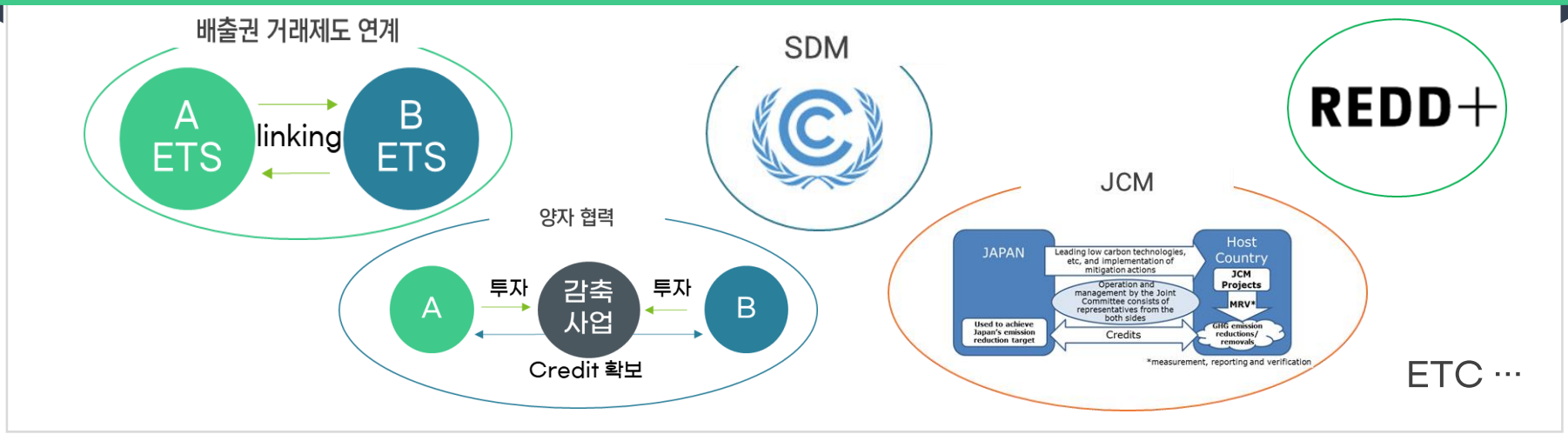

각 메커니즘 사이의 감축량 이전 등이 6.2조의 협력적 접근법에 포함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6 파리협정 6.4조

중앙집중식 거버넌스 구조라는 점에서 교토의정서의 CDM과 유사
온실가스 순감축과 환경적 건전성을 위한 이중계상 방지 원칙 준수

6.4 조 지속가능 메커니즘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당사국총회에서 지정한 감독기구에서 관리하는 메커니즘으로 감축 실적의 발행 및 국가감축목표 이행에 활용

CDM과 6.4조 메커니즘(SDM) 비교

구분	CDM	SDM
목적	기후변화협약 목표 및 지속가능발전 달성	온실가스 순감축 및 지속가능 발전 기여
추진 원리	감축 성과의 이전을 통한 상쇄	전지구적 감축 및 순감축
거래 및 이전 대상	감축단위(Unit)	감축결과(Outcome)
개도국 의무	개도국 감축 목표 X	모든 당사국의 감축목표 달성
관리주체	CDM 집행위원회(EB)	CMA 지정기구(SB)
자발성 여부	자발적 참여	자발적 참여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7 파리협정과 국내 탄소시장의 연계

협력적접근법과 6.4조메카니즘은 ITMO화 하여 국가 NDC에 활용
ITMO기반의 상응하는 조정을 통해 국가 총 배출량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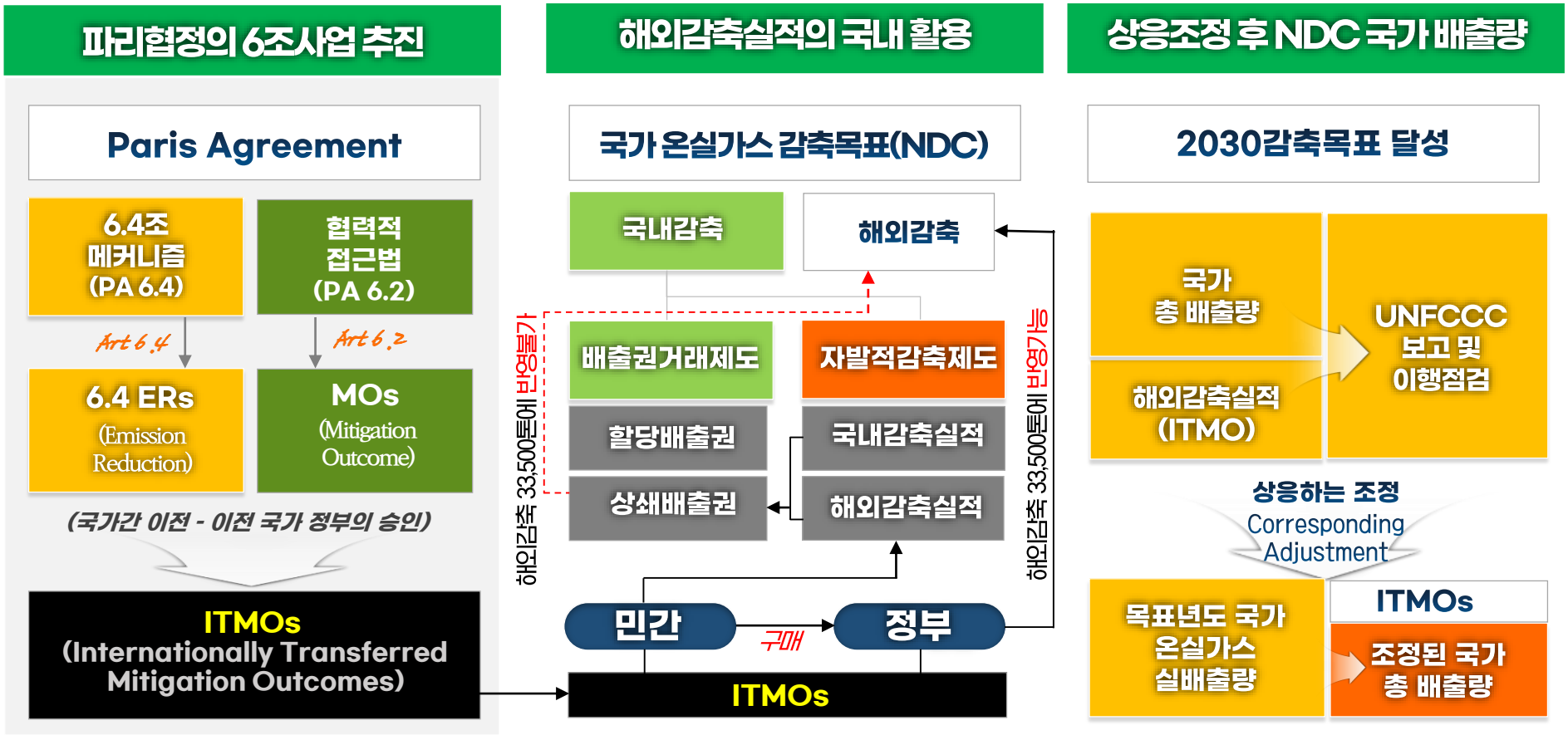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CHAPTER 2

파리협정 6조 협상결과

1. 파리협정 6.2조 핵심 아젠다
2. 파리협정 6.2조 핵심결정사항
3. 파리협정 6.4조 핵심 아젠다
4. 파리협정 6.4조 핵심결정사항
5. 파리협정 6조 핵심결정사항
6. COP27이후 파리협정 6조 논의 이슈

01 파리협정 6.2조 핵심 아젠다

파리협정 6.2조의 핵심 아젠다는 감축실적의 추적 및 보고서 검토 관련 전반적인 사항과 더불어
ITMOs의 활용 목적와 상응조정 방식 등에 대해 논의

- ✔ 감축실적의 추적(Tracking) (decision 2/CMA3. annex, para 29 관련)
- ✔ 국제 등록부(International registry) (decision 2/CMA3. annex, para 30 관련)
- ✔ 중앙 산정 및 보고 플랫폼 (decision 2/CMA3. annex, para 26 관련)
- ✔ 파리협정 6조 데이터베이스 관리 (decision 2/CMA3. annex, para 32 관련)
- ✔ 파리협정 6조 기술 전문가 검토 가이드 (decision 2/CMA3. annex, chapter V(Review) 관련)
- ✔ 파리협정 6조 기술 전문가 검토 팀 및 제도적 정비
- ✔ 파리협정 6조 기술 전문가 검토 보고서(최초보고서, 갱신 최초보고서, BTR 등) 개요
- ✔ 파리협정 6조 기술 전문가 검토 훈련 프로그램
- ✔ ITMOs 활용 목적 지정 및 상응조정 방식 등

ITMOs의 활용 목적과 상응조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고, 초기보고서 양식, 등록시스템 개발 사항, 6.2조 활동의 검토 지침 등이 일부 확정됨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2 파리협정 6.2조 핵심 결정사항

[COP27 파리협정 6.2조 핵심 결정사항]
파리협정 6조 데이터와 관련한 검토 및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결정

레지트스리 **ITMOs 협력을 위한 추적 기반 마련**	파리협정 6.2조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레지스트리 마련하도록 결정 - **(레지스트리 목적)** 협력시 발생할 ITMOs의 효율적 관리 - **(기록 방법)** 각 ITMOs에 시리얼 넘버 등을 통한 개별 인식자(identifier) 부여 - **(기록 사항)** 승인, 첫번째 이전, 이전, 획득, NDC에 대한 사용, 기타 국제 감축 목적에 대한 사용, 자발적 취소 등과 관련한 사항
중앙 산정 및 기록 플랫폼 **파리협정 6조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 확보**	파리협정 6.2조를 통해 발생하는 정보는 중앙 산정 플랫폼에 기록 - **(중앙 산정 플랫폼의 목적)** 협력적 접근법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 디지털 웹 기반 플랫폼으로 운영 되며, 국제 레지스트리 및 6조 데이터를 포함 - **(파리협정 6조 데이터)** 상응조정과 배출 균형 및 ITMOs의 첫번째 이전, 이전, 획득, 보유, 취소, OMGE 취소 등의 정보
6조 기술 검토 가이드라인 **파리협정 6조 데이터 검토의 방향성 정립**	- **(원칙)**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 일치성 및 비교성의 원칙 준용 - **(범위)** 최초보고서, 갱신된 최초보고서, BTR, 6조 데이터베이스 - **(주체)** 파리협정 6조 기술 검토 전문가
검토 전문가 양성 **파리협정 6조 데이터 기술 전문가 확대**	참여당사국은 기술 전문가를 지정하고, 사무국은 군소도서국이나 최빈개도국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파리협정 6조 기술 검토 전문가 훈련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참고 합의된 초기보고서 양식

Annex VII*

Draft version of the agreed electronic format referred to in decision 2/CMA.3, annex, chapter IV.B (Annual information)

[English only]

Draft version of the agreed electronic format is available digitally at https://unfccc.int/documents/624366

{Required fields are in bold}

Table 1: Heading

Party	Party
Reported year[a]	Year

[a] *The annual period from 1 January to 31 December during which actions occurred.*

Table 2: Actions

		ITMO											
		Unique identifier				*Metric and quantity*				*ITMO details*			
Article 6 database record ID	***Cooperative approach***[a]	***First unique identifier***[b]	***Last unique identifier***[c]	*Underlying unit block start ID*[d]	*Underlying unit last block ID*[e]	***Metric***[f]	*Quantity (expressed in metric)*[g]	***Quantity (t CO_2 eq)***	*Conversion factor (reporting Party)*[h]	***First transferring participating Party***[i]	***Vintage***[j]	***Sector(s)***[k]	***Activity type(s)***[l]
	Cooperative approach Article 6.4 mechanism											Energy IPPU AFOLU Waste	

* The list of the acronyms and abbreviations used in this annex can be found at the end of the document.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참고 합의된 초기보고서 양식

(Table continues)

Authorization					Actions						
					Action details						
Date of authorization[m]	***Authorization ID***[n]	***Purposes for authorization***	***OIMP authorized by the Party***[o]	***First transfer definition***[p]	***Action date***[q]	***Action type***[r]	***Transferring participating Party***[s]	***Acquiring participating Party***[t]	***Purposes for cancellation***[u]	***Using participating Party or authorized entity or entities***	***First transfer***[v]
		NDC		Authorization							
		OIMP		Issuance							
		NDC and OIMP		Use or cancellation							

[a] Name/ID of the cooperative approach as per common nomenclatures.[1]
[b] First ITMO unique identifier.
[c] Last ITMO unique identifier.
[d] Underlying unit block start ID for ITMOs recorded on the basis of cooperative approach units tracked in an underlying cooperative approach registry.
[e] Underlying unit block end ID for ITMOs recorded on the basis of cooperative approach units tracked in an underlying cooperative approach registry.
[f] GHG or non-GHG.
[g] For non-GHG, the metric in which the ITMO was generated as per common nomenclatures.
[h] The conversion method or factor of the non-GHG units in the reporting Party's as per decision 2/CMA.3, annex, para. 22(d).
[i] Participating Party in which the mitigation outcome was generated as per common nomenclatures.
[j] Year in which the mitigation outcome occurred.
[k] Sector(s) where the mitigation outcome occurred as per common nomenclatures based on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uidelines.
[l] Description of the mitigation activity type(s) as per common nomenclatures.
[m] Date of authorization by first transferring Party.
[n] Authorization ID as assigned by the first transferring Party, may include a link to the public evidence of authorization by the first transferring Party.
[o] Fill when "Purposes for authorization" is "OIMP" or "NDC and OIMP".
[p] If OIMP is authorized, the first transferring participating Party definition of "first transfer" as per decision 2/CMA.3, annex, para. 2(b).
[q] Date on which the action was executed in the registry of the reporting Party.
[r] Action type as per decision 2/CMA.3, annex, paragraph 20(a) and any further relevant guidance.
[s] Initiating participating Party, including for cancellations and uses.
[t] Participating Party receiving the ITMOs.
[u] For relevant actions, the specific purposes for cancellation towards which ITMOs can be or were used.
[v] Approach for first transfer as per decision 2/CMA.3, annex, paragraph 2 to be clarified, subject to defining the list of actions as per note "r" above.

[1] Common nomenclature to be established at the fif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November–December 2023).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참고 합의된 초기보고서 양식

Table 3: Holdings

Article 6 database record ID	Cooperative approach[a]	ITMO: Unique identifier: First unique identifier[b]	Last unique identifier[c]	Underlying unit block start ID[d]	Underlying unit block end[e]	ITMO: Metric and quantity: Metric[f]	Quantity (expressed in metric)[g]	Quantity (t CO_2 eq)	Conversion factor (reporting Party)[h]	ITMO details: First transferring participating Party[i]	Vintage[j]	Sector(s)[k]	Activity type(s)[l]
	Cooperative approach Article 6.4 mechanism											Energy IPPU AFOLU Waste	

(Table continues)

Authorization: Date of authorization[m]	Authorization ID[n]	Purposes for authorization	OIMP authorized by the Party[o]	First transfer definition[p]
		NDC OIMP NDC and OIMP		Authorization Issuance Use or cancellation

[a] Name/unique identifier of the cooperative approach as per common nomenclatures.
[b] First ITMO unique identifier.
[c] Last ITMO unique identifier.
[d] Underlying unit block start ID for ITMOs recorded on the basis of cooperative approach units tracked in an underlying cooperative approach registry.
[e] Underlying unit block end ID for ITMOs recorded on the basis of cooperative approach units tracked in an underlying cooperative approach registry.
[f] GHG or non-GHG.
[g] For non-GHG, the metric in which the ITMO was generated as per common nomenclatures.
[h] The conversion method or factor of the non-GHG units in the reporting Party's as per decision 2/CMA.3, annex, para. 22(d).
[i] Participating Party in which the mitigation outcome was generated as per common nomenclatures.
[j] Year in which the mitigation outcome occurred.
[k] Sector(s) where the mitigation outcome occurred as per common nomenclatures based on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uidelines.
[l] Description of the mitigation activity type(s) as per common nomenclatures.
[m] Date of authorization by first transferring Party.
[n] Authorization ID as assigned by the first transferring Party, may include a link to the public evidence of authorization by the first transferring Party.
[o] Fill when "Purposes for authorization" is "OIMP" or "NDC and OIMP".
[p] If OIMP is authorized, the first transferring participating Party definition of "first transfer" as per decision 2/CMA.3, annex, para. 2(b).

31

FCCC/PA/CMA/2022/L.15

한국기후변화연구원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3 파리협정 6.4조 핵심 아젠다

파리협정 6.4조 핵심 아젠다는 기존 교토체제의 CDM 및 CER의 전환 및 이전과 관련한 사항이며, 행정비용 등에 관한 사항 제시

- CDM 사업의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 전환 프로세스
-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에 따른 CER 이전
- 파리협정 6.4조 배출 감축 활동에 대한 사업국의 보고
-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 레지스트리 운영
-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 행정 비용에 대한 필요 절차
-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 전지구적 배출 감축(OMGE) 비용에 대한 필요 절차
-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 감독기구(SB, Supervisory Body)의 절차에 대한 규정

기존 교토체제의 CDM 사업 기간과, CER 사용을 위한 신청 절차 등이 마련되었으며, 6.4조 메커니즘의 방법론 및 전환 지침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4 파리협정 6.4조 핵심 결정사항

[COP27 파리협정 6.4조 핵심 결정사항]
기존 교토체제의 전환과 신규 체제의 행정비용 등에 대한 결정

CDM 전환 절차

기존 CMA3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명확화

- **(CDM 사업의 인증유효 기간)** CDM 잔여 인증유효기간, 2025년 12월 31일, 참여당사국이 결정한 인증유효기간 중 가장 빠른 날짜
- **(전환절차)** CDM 사업참여자의 유치국 DNA에 전환 요청(2023.12.31이전)
→ DNA의 SB에 대한 전환 승인 요청(2025.12.31 이전)
  * 기존 Provisional CDM의 경우 전환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갱신 혹은 실적 발급 가능하며, 전환이 된 이후 부터는 6.4조 메커니즘의 활동 싸이클을 준용해야 함
- **SOP 부담이 필요한 경우**
  ① 임시 CDM 사업의 전환 승인되어 6.4조 메커니즘으로 등록 시
  ② 임시 단위사업의 프로그램 사업 포함 시
  ③ 임시 CDM 사업의 전환 승인 후 인증유효기간 갱신 시

CER 이전 절차

메커니즘 레지스트리 활용 이전 결정

- CDM 계정에 있는 CER을 메커니즘 레지스트리로 이전하며, 이 경우, 해당 CER에 대한 전체 시리얼 넘버가 필요. 또한, 메커니즘 레지스트리 담당자는 이전받은 CER1에 새로운 인식자(identifier)를 입력
  * 메커니즘 레지스트리로 이전된 CER은 첫번째 NDC 달성에 활용 가능 (추후 SB 결정에 따라)

행정비용

6.4조 활동 수행 시 필요한 행정비용

- **(SOP 부담에 따른 행정비용 포함 사항)** 6.4조 사업 등록, CPA 포함, A6.4ERs 인증, 인증유효기간 갱신, PCR 등 5가지 경우
- **등록비용 =** 2,000USD ~ 12,000USD (연간 감축량에 따라 상이)
  * 단위사업 포함비용은 최대 1,000USD/매 포함시
- **인증비용 =** 0.20USD / A6.4ERs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5 파리협정 6조 핵심 결정사항

6.2조와 관련해서는 탄소시장과 관련된 사항보다는 6조 검토 및 추적 관련사항이 주를 이뤘으며
6.4조와 관련해서는 기존 교토체제의 전환 및 이전 등 사항 명확화

구분	파리협정 6.2조	파리협정 6.2조
1	**레지스트리(International Registry)** 각 참여 당사국은 국가 간 양자협력 시 필수 사항인 ITMOs의 추적 기반 마련 필요	**CDM 사업 전환 절차** 기존 CMA3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명확화와 더불어 전환된 사업에 대한 SOP 부담 결정
2	**중앙 산정 및 기록 플랫폼** 중앙 산정 및 기록 플랫폼을 통해 파리협정 6조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양자협력의 투명성 확보	**CER 이전 절차** 첫번째 NDC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된 Pre-2021 CER에 대한 6.4조 메커니즘 레지스트리 이전 방법 결정
3	**6조 기술 검토 가이드라인** 파리협정 6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술 검토 가이드라인 초안 개발 완료	**행정 비용** 추후 6.4조 메커니즘 사업 시, SOP의 행정비용 포함사항 및 등록, 인증 비용 명시
4	**검토 전문가 양성** 보고서 검토의 인력 Pool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 검토 전문가 양성을 통해 파리협정 6조 검토 강화	-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6 COP27 이후 6조 논의 이슈

COP27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은 추후 COP28 및 COP29 등에서 다뤄질 내용

주요 이슈였던 ITMOs 활용 목적 승인 전환이나 상응조정 방법론 등은 연기

ITMOs 활용 목적 승인 전환

> ITMOs의 활용 목적은 NDC 활용 혹은 기타국제감축목적(OIMP)으로 결정된 바, ITMOs의 발급 이후 활용 목적 변경 관련 사항이 논의되다가 2023년으로 협상 연기

- 현재 우리나라는 NDC와 K-ETS에 ITMOs를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의 사업참여자는 ITMOs 활용 목적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시장)이 달라질 수 있음

상응조정에 따른 국외감축실적 필요량 산정 방법

> 예시적 경로방식(indicative trajectory) 등을 적용 시, 경로 설정 방법론과, 배출 및 제거의 누적 배출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 논의는 2024년으로 협상 연기

- 우리나라는 당사국총회 결정에 따라 예시적 경로방식 혹은 평균방식을 선택해서 국외감축의 상응조정 경로를 재설정 해야 하는 바, 협상 연기로 인해 시기가 늦춰짐

이외 잔여 논의사항

- ITMOs가 배출 회피(emission Avoidance)를 포함할 경우에 대한 고려
- 최초 보고서 제출의 술서 및 시기, 해당 보고서에 대한 6조 기술 전문가 검토 완료 등
- 정기적 정보의 일부인 연간 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표
- 제출된 ITMOs 간 불일치를 인식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 등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CHAPTER 3

파리협정 6조 활용 국제감축사업 추진 전략

1. 파리협정 6.2조 활용 핵심 체크사항
2. 파리협정 6.4조 활용 핵심 체크사항

01 6.2조의 핵심고려사항 - ITMO

CMA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래 ITMOs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파리협정 6조 하 다양한 유형의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ITMOs를 인정받을 수 있음

- ✓ 실제적이고, 검증가능하며, 추가성이 있어야 한다.
- ✓ 국제적으로 이전될 경우, 배출감축 및 제거는 감축 공편익을 포함해야 하며, 적응 활동 및/혹은 경제적 다각화 계획 혹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
- ✓ CMA에서 채택한 IPCC가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이산화탄소 상당량톤(tCO_2-eq)으로 측정되거나, 참여 당사국의 NDC에 부합하는 기타 비 온실가스 산정 방법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 ✓ 파리협정 6.2조 협력적 접근법에 따른 활동에서 발생해야 하며, 파리협정 6.3조에 적절한 방식으로 NDC 달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감축실적의 국제적 이전이 승인되어야 한다.
- ✓ 2021년부터 발생한 감축이어야 한다.
- ✓ 참여 당사국에 의해 승인된 감축실적 중 NDC 달성 목적이 아닌 국제 감축목적 혹은 기타 목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국제감축목적 및 기타 목적은 합쳐서 기타 국제 감축목적으로 규정한다.)
- ✓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에 따른 A6.4ERs가 NDC 달성 혹은 기타 국제감축목적 활용을 위해 승인된 경우에도 ITMOs이다.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1 6.2조의 핵심고려사항 - 참여국 요건

파리협정 6.2조에 참여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함

출처: UNFCCC/PA/CMA/2021/L.18 Annex II. Participation

"원칙: ITMOs의 활용을 수반하는 협력적 접근법에 참여하는 각 참여당사국은 협력적 접근 방식에 참여 및 승인, ITMOs 이전을 보장해야 함"

요건1.	요건2.	요건3.	요건4.	요건5.	요건6.
파리협정 당사국 여부	NDC 제출 여부	ITMOs 승인 기반 마련	ITMOs 추적 기반 마련	NIR 제출 여부	NDC 및 LEDS 부합성
필수요건	필수요건	협약 시 구축	Int. 등록부 활용가능	미존재 시, 구축지원 必	필수요건

NIR: National Inventory Report,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LEDS: Long-term low-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협력국 선정 시 참여당사국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 및 필요시 NIR 개발 등 협력국의 역량 강화 필요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1 6.2조의 핵심고려사항 - 절차

자발적 협력에 근거하는 파리협정 6.2조는 참여당사국 간 협약 및 ITMOs 승인 기반 마련 등이 필수

단, 고정적인 절차는 제시되진 않으며, 국가별 협의에 따라 절차 마련이 필요

사업기반 및 모델 구축 절차		사업수행 및 감축실적 확보 절차	
국가 간 협정	ITMOs 승인 기반 마련	감축사업 수행	ITMOs 확보
CMA3 Annex II. Participation 고려	CMA3 Annex I. ITMOs 고려	파리협정 6.2조 下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감축실적 검증/확보, 상응조정 적용 및 국가 간 이전

CMA: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 파리협정 당사국총회

참여당사국 요건 및 ITMOs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다양한 사업모델을 적용하여 협력적 접근법 수행 가능
이에 따라 국제사회(일본, 스위스 등)은 서로 다른 양자협력 모델 개발 및 이행 中

*** 위 절차는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참고 국내법 상 국제감축사업 추진 절차 - 사전승인 절차(안)

구분	절차	수행주체	수행내용
1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	국제감축사업 사업수행자	사업계획서(사업명,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모니터링 방법 등) 제출
2	국제감축사업 접수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타당성평가 수행
3	타당성 평가		
4	타당성평가 의견 통보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타당성 평가 의견 통보, (필요시) 시정조치 요구
5	(수정·보완)	국제감축사업 사업수행자	수정·보완서류 제출
6	타당성평가 완료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추가 타당성평가(문서평가)
7	국제감축사업 사전 심의요청	부문별관장기관의 장	검토 결과 제출
8	사전 승인 심의	국제감축심의회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여부 결정
9	심의결과 통보	국무조정실장	결과 통보
10	국제감축사업 등록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국제감축등록부에 사전 승인 사업으로 등록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참고 국내법 상 국제감축사업 추진 절차 - 감축실적 보고(안)

구분	절차	수행주체	수행내용
1	국제감축실적 보고	국제감축사업 사업수행자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보고서 제출
2	국제감축실적 검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국제감축실적 검토
3	국제감축실적 검토 결과 통보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국제감축실적 검토서 통보 (필요시) 시정조치 요구
4	(수정·보완)	국제감축사업 사업수행자	수정 및 보완
5	검토 완료 및 사전승인 요청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검토결과의 국제감축심의회 제출
6	국제감축실적 심의	국제감축심의회	심의결과가 국제감축실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를 사전 승인
7	국제감축실적의 발행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국제감축사업 발행계정에 국제감축실적 발행
8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신고	국제감축사업 사업수행자	실적 취득사실을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
9	국제감축실적의 등록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 및 이력관리

* 국제감축실적의 통해 매매, 거래 또는 소멸, 해외로 이전 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법 제35조제6항 및 국제감축사업 지침(행정예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통해 사업수행 방법(방법론, 인증유효기간 등)의 승인, 국제감축사업의 등록, 국제감축실적의 이전에 대한 심의 승인 가능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참고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및 역할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의 역할

-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 분석 및 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임업)

Kofpi 한국임업진흥원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축산, 식품)

kr Clean & Green 한국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 (건물, 교통, 건설)

해외건설협회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

환경부 (폐기물)

한국환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발전 분야)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해양수산부 (해양, 수산, 항만 분야)

KOEM 해양환경공단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1 6.2조의 핵심고려사항 - 6.2조 사업 준비과정의 체크사항

양자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정부간 승인한 감축사업을 이행하고 실적을 이전

실적이전의 risk는 최소화가능, 정부간 승인사업으로 장단점이 존재

방법론
- 승인방법론유무

추가성
- 법/제도적 추가성
- 경제적 추가성

지속가능성
- 개도국지속가능성

사업 수행국가
- 양자협력체결여부
- 국가 자격 요건
- 국가 RISK(사례)

감축실적 활용
- 국내 ETS활용
- 국내 탄소시장
- 정부구매

실적 이전비율
- ITMO 승인
- ITMO 이전비율

재원조달
- 금융활용
- 자체투자
- 정부공동투자
- 장기구매계약

경제성
- ETS가격
- 손실율
- 기타수익

ITMO
- 요건
- Registry
- 이전량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2 6.4조의 핵심고려사항 - 활동요건

CMA 결정문 파리협정 6.4조 별표 para 31 근거와 더불어

유치국(Host country)의 6.4ERs 이전 관련 정책/법률 검토 필요

- ☑ 추가성이 있으며,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환경건전성이 있어야함
- ☑ 사업 혹은 프로그램 활동은 SB의 승인을 득해야 함
- ☑ 유치국(host party) 내에서 배출 감축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함
- ☑ 사업은 현실적이고, 측정가능하며, 기후변화와 관련한 장기적인 편익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함
- ☑ 누출의 위험성을 최소화 해야 하며, 비영속성의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함(산림부문)
- ☑ 부정적인 환경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 지역주민 및 원주민 사회의 준비와 참여 보장, 준국가 단위에서의 이해관계자 협의필요
- ☑ 인증유효기간 : 일반고정형: 5년, 갱신형: 최대 15년(5년, 2회 갱신), 산림: 15년, 2회 갱신

? 가장중요 : Host국가에서의 6.4ERs(ITMO)의 이전과 관련한 정책 및 법규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2 6.4조의 핵심고려사항 - 참여국 요건

파리협정 6.4조 하 감축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함

출처: UNFCCC/PA/CMA/2021/L.18 Annex II. Participation

"주요사항: 유치국은 CMA3(COP26)의 결정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을 만족하는 국가여야 하며, 유치국의 ITMOs 상응조정 승인 의사가 매우 중요"

요건1.	요건2.	요건3.	요건4.	요건5.
파리협정 당사국 여부	NDC 제출 여부	DNA 존재 여부	SD에 기여함을 입증	NDC 및 LEDS 부합성
필수요건	필수요건	필수요건	필수요건	필수요건

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국가승인기구
SD: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개발

6.4조 하 사업대상국 설정 시 해당 국가의 유치국 요건 충족여부 확인 필요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2 6.4조의 핵심고려사항 - 절차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은 CMA에서 정한 감독기구(SB, Supervisory Body)가 운영

따라서, 파리협정 6.2조와 다르게 고정적인 이행절차 존재

사업 등록절차 → 감축실적 인증 절차 →

사업참여자	DOE	감독기구(SB)	사업참여자	DOE	감독기구(SB)
사업개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사업 등록 승인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검증	감축실적(A6.4 ERs) 인증 및 발급

감축실적(A6.4ERs)의 공제 및 취소 →

SOP: 인증량의 5% 공제하여 적응재원으로 활용

OMGE: 인증량의 최소 2% 취소

SOP: Share of Proceeds, 수익분담금, OMGE: 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전지구적 전반적 감축

Mechanism Registry에 예치된 A6.4ERs는 유치국의 상응조정 승인 후 ITMOs로써 이전됨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2 6.4조의 핵심고려사항 - 6.4조 사업 준비과정의 체크사항

UN주도의 6.4조메카니즘을 활용하여 ERs를 발행받아 ITMO로 이전

UN제도로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으나, ITMO이전관련 정부협상 등 능력필요

사업 수행 국가법령

- ITMO 이전관련 국가정책
- 해당국가의 NDC
- 해당국가의 LEDs
- ITMO 이전 Process

ITMO 발행

- 사업 수행 전 ITMO 이전합의
- 감축 예상량의 보수적 산정

지속가능성

- 개도국 SDG

승인방법론

- UNFCCC 승인

추가성

- 법/제도적 추가성
- 경제적 추가성
- 기술적 추가성(?)

베이스라인

- BL 설정방식 고려

사업유효기간

- 갱신/고정형

TAX

- SOP
- OMGE
- 국가별 세금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ANNEX

우리나라 및 해외국가의 파리협정 6조 동향

1. 탄소중립기본 법 등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6조 관련 주요내용
2.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6조 사업 사례 (몽골)
3. 해외국가별 파리협정 6.2조 활용 동향

01 탄소중립기본법 등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6조 관련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 기본법)

2021년 9월 24일 제정 이후, 2022년 3월 시행 및 9월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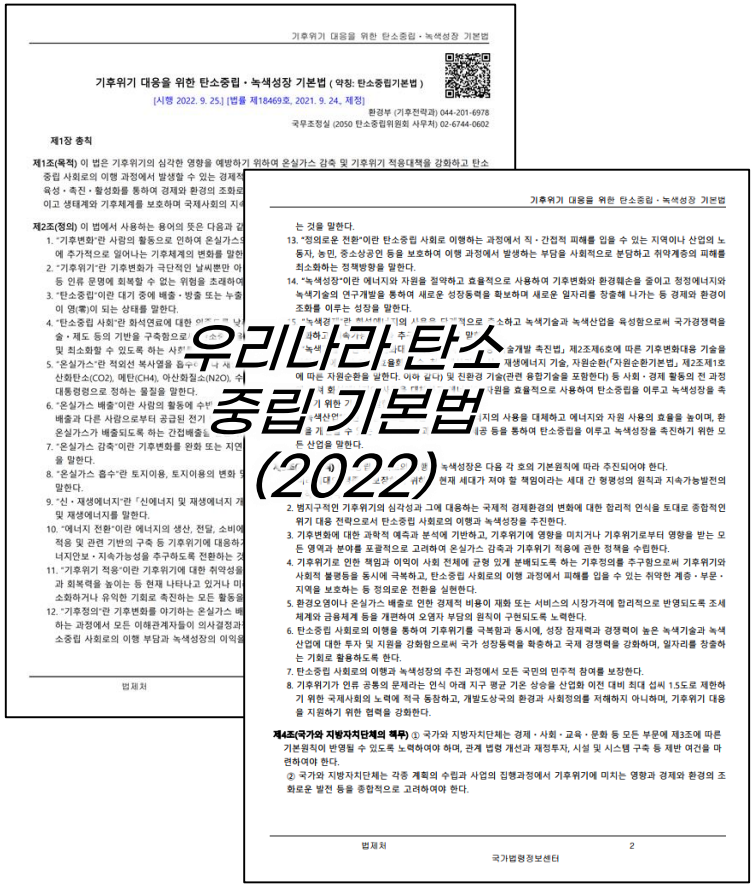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 (2022)

시사점

목적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중략)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 절차]

① **(사업자)**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② **(정부)** 사전승인
③ **(사업자)**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보고, (제3자 검증기관 검증)
④ **(사업자)** 국제감축실적 취득 및 정부에 신고
⑤ **(정부)** 신고된 감축실적을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하고 관리
⑥ **(사업자)** 추후 국제감축실적 매매 및 거래 시 거래 사실을 신고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수행 시]

외국정부와 협의하여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두며, 협의체 하에서 사업수행 방법의 승인, 사업등록, 실적 이전에 대한 심의 수행 가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1 탄소중립기본법 등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6조 관련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약칭: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2021년 9월 24일 제정 이후, 2022년 3월 시행 및 9월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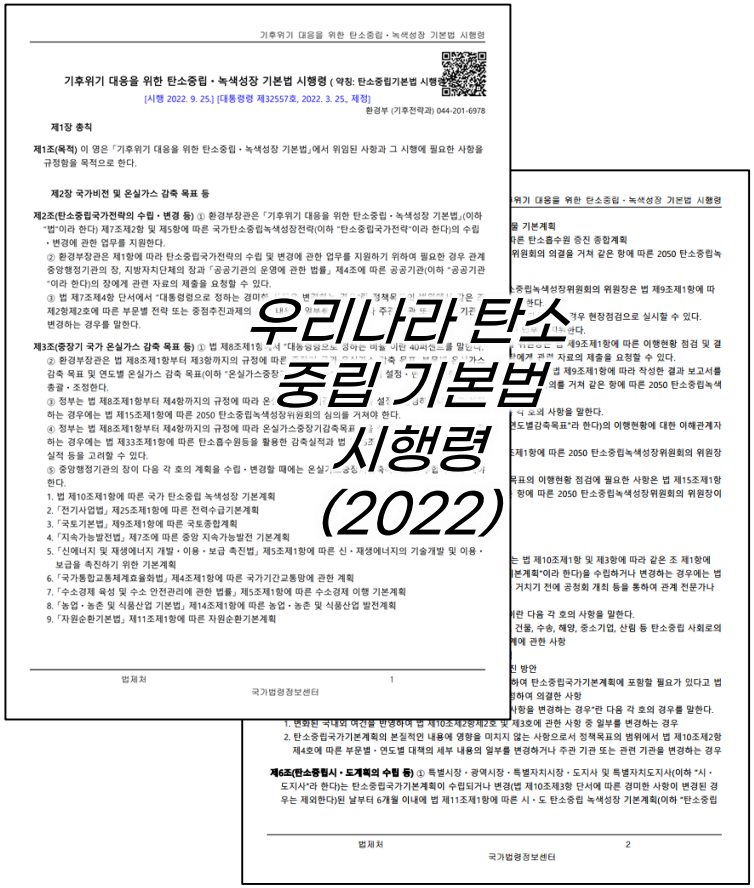

시사점

주요사항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 방법 및 절차]

① **(1단계. 사업 사전 승인)** 사업수행자는 사업계획서 상에 사업명, 사업국가, 사업의 내용, 기간 및 참여자, 온실가스 예상감축량과 산정방법 및 근거, 모니터링 방법과 계획을 제시

* 국제감축심의회에서 사전승인하며, 국제감축사업의 지속성, 환경성 및 측정·검증 가능성, 추진 방법 및 모니터링의 적절성, 시행되는 국가의 사업 응인 조건에 따른 이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

② **(2단계. 사업의 모니터링)** 사업수행자는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등을 제출

③ **(3단계. 국제감축실적 취득, 거래 및 이전)** 사업 수행자는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며, 국내 이전 시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외로 이전 시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이외 국제감축 등록부 및 전담기관 관련 사항 제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2 우리나라의 6.2조 사업 사례

몽골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파리협정 6.2조 기반의 정부시범사업을 추진

연간 54,550tCO2eq의 온실가스 감축전망 - 정부주도 사업

매립장 매립가스를 포집, 소각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

사업 추진 경과

> 사업타당성조사 완료('21.5) 및 몽골 매립장(NEDS) 기본설계(~'22.5)
> 환경공단-울란바토르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업무협약'체결 ('21.10)
> 파리협정 제6조 감축협력을 위한 사업의향서 교환 ('21.12)
> 시범사업자 지정 및 업무협약 체결(공단-매립지공사) ('21.12)

대한민국 환경부-몽골 환경관광부간 파리협정 제6조 협력적 접근에 관한 이행약정

제2항파리협정 하 협력적 접근

양 당사자는 본 이행약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파리협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협력적 접근방식을 구현한다.

제5항 온실가스 감축성과 및 상응조정

양 당사자는 위원회 승인을 득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감축성과를 파리협정 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양 당사자는 전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각국의 국가결정기여 이행 및 달성을 위해 상응조정을 실시한다.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3 해외국가별 6.2조 활용 동향 - 일본 JCM

제도명: 일본 JCM(Joint Crediting Mechanism), 운영주체: 일본 정부

제도 개요 및 수행절차

- 제도 개요: 일본의 NDC 달성 및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2012년부터 운영 중
- 제도 수행절차: ①양국간 협정체결, ②세부협의, ③방법론 개발, ④방법론 등록, ⑤사업계획서 개발, ⑥사업 등록, ⑦모니터링 및 검증, ⑧감축실적 발행, ⑨감축실적 등록 등

주요 거버넌스

- 양국 정부(일본 - 사업국)
- 사업참여자(Project Participant)
- 검증기관(Third Party Entity)
- JCM 사무국
-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제도적 특이사항

1. 일본 JCM은 일본 및 사업국 간 양자협력을 통한 감축실적 확보 및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일본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2. 일본은 JCM 메커니즘을 파리협정 6.2조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 또한, 획득한 감축실적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 분배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3 해외국가별 6.2조 활용 동향 - 스위스 Klik Foundation

제도명: 스위스 Klik Foundation, 운영주체: 스위스 정부

제도 개요 및 수행절차

- 제도 개요: 스위스 NDC 달성 및 공편익 창출, 협력국의 NDC 달성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스위스 석유협회에서 설립
- 제도 수행절차: ①신청/등록, ②MAIN 제출, ③MAIN 평가, ④MADD 작성 및 제출, ⑤감축사업 승인, ⑥MOPA 체결 등

주요 거버넌스

- 스위스 정부
- 사업참여자(민간단체)
- 협력국가(Transferring Country)
- Klik Foundation 재단
- 제3자 검증기구

제도적 특이사항

1. Klik Foundation ToR을 통해 적격 프로그램 및 MAIN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생물학적 CO_2격리 프로그램 및 REDD+ 사업의 경우 부적격 프로그램 유형으로 분류
2. MAIN 선정 시 2030년까지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이 최소 500,000톤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된CDM 사업 및 2016년 11월 4일 이전에 PoA에 추가된 CPA는 제외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3 해외국가별 6.2조 활용 동향 - 북유럽 NICA

제도명: 북유럽 NICA 프로그램, 운영기관: NEFCO(북유럽 환경 재정 법인)

제도 수행절차

- 제도 개요: 북유럽 5개국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기후행동 증진 및 탄소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2018년 NEFCO를 통해 설립
- 제도 수행절차: ①사업 문의, ②사업 제안, ③ NEFCO 파이프라인 추가, ④최초 승인, ⑤ 최종 승인, ⑥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등

주요 거버넌스

- 사업 참여자(민간사업자)
- 투자매니저(NEFCO)
- 투자위원회(NEFCO)
- 스크리닝팀(NEFCO)
- 이사회(NEFCO)
- 환경전문가(NEFCO)

제도별 특이사항

1. NICA 프로그램은 한 국가가 아닌 북유럽 국가(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가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구성한 이니셔티브로써 NEFCO라는 법인을 통해 공동 운영
2.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추후 파리협정 6.4조와 연계하여 발급 예정
3. 투자 매니저, 환경 전문가 등을 두어 경제·환경적 건전성에 초점을 둔 사업 선정 기준 보유

→ 현재까지 감축실적 발급 사례가 없어, 감축실적 배분 관련 사항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03 해외국가별 6.2조 활용 동향 - 스위스 MADD

제도명: 스웨덴 MADD Program, 운영기관: 스웨덴 에너지청 Swedish Energy Agency

제도 개요 및 수행절차

- 제도 개요: 파리협정 6조 양자협력을 통해 스웨덴 NDC 달성 및 인센티브 시스템 기여를 목적으로 국제사회에 사업제안서 제출 요청
- 제도 수행절차: ①컨셉노트 작성, ②컨셉노트 검토 및 승인, ③MADD 작성, ④사업국 승인, ⑤MOPA 작성, ⑥MOPA 체결 등

주요 거버넌스

- 스웨덴 에너지청(SEA)
- 사업참여자(Project entity)
- 사업국 (Host Country)
- 공동 투자자(Reputable buyer)

제도별 특이사항

1. 스웨덴 MADD 프로그램은 에너지 부문 양자협력을 통한 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스웨덴 정부(스웨덴 에너지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2. 2019년 공개한 Call for Proposal 상 지원 불가능 사업분야 ,컨셉노트 검토 기준 및 신청 접수된 사업 중 5개 사업에 대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 계획 제시

→ MADD 프로그램의 경우 방법론, MRV 절차 등은 확인 불가

COPYRIGHT © 2021 KRIC. ALL RIGHT RESERVED.

Q&A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repare for the Clean Future with KRIC

이충국 탄소배출권센터장 | cklee@kric.re.kr